

주요 현안 업무 보고

2022. 9. 20.

재 무 국

1

차질없는 시세 징수목표 달성

부동산 경기 침체로 전년 대비 취득세는 감소한 반면, 법인세 등 실적 향상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증가하여 세입 목표 달성 가능

□ 징수 목표 및 실적

- 징수 목표 : 23조 956억 원 (전년 대비 15.3% 증가)
- 징수 실적 : 15조 8,822억 원 (7월 말 현재)

(단위: 억원, %)

구 분	'22년 예산액 (A)	점유율	'22년 징수액 (B)	진도율 (B/A)
계	230,956	100.0	158,822	68.8
취 득 세	62,046	26.9	38,390	61.9
지 방 소 득 세	60,521	26.2	67,276	111.2
재 산 세	38,276	16.6	12,380	32.3
지 방 소 비 세	21,892	9.5	12,395	56.6
기 타 시 세	48,221	20.8	28,381	58.9

□ 주요 세목 징수 상황

- 총 괄 : 연간 목표 대비 68.8% 진도율, 전년 동기 대비 4.9% 증가
- 취득세 및 지방소득세
 - 취득세는 주택 등 거래량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1조 798억 원 감소
 - 지방소득세는 금융, 반도체 업종 법인 실적증가로 1조 3,642억 원 증가

□ 향후계획

- 시세 징수 자치구 지도 점검(징수목표 및 진도율) : 9~10월
- 시세 징수 대책 회의 개최(징수율 제고 대책 마련) : 10월

2

전자고지·납부 마일리지 및 세액공제 통합

전자고지·납부 납세자에 대하여 마일리지 적립과 세액공제를 별도로 지원 하였으나 이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통합하여 운영

□ 마일리지 및 세액공제 운영 현황

- **마일리지** : 전자고지·납부자 350~850원 지원('07년 시행)
 - 근거 : 「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제3조
- **세액공제** : 전자송달·자동이체 납부자 250~600원 지원('10년 시행)
 - 근거 : 지특법 제92조의2, 「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」 제16조

□ 마일리지 및 세액공제 현행 지원 현황

- **마일리지** (단위: 원)

구 분		전자고지+전자납부	전자고지+자동이체
마일리지	30만 원 이상	850	500
	30만 원 미만	350	350

※ 전자납부 : ETAX, 자동계좌이체, ATM, 모바일납부 등 온라인 납부(규칙 제3조 제2항)

- **세액공제** (단위: 원)

구 분	전자송달	자동이체	전자송달+자동이체
세액 공제	250	250	600

※ 자동이체 : 신용카드 자동이체, 계좌 자동이체(법 제92조2 제1항)

□ 마일리지·세액공제 통합 추진

(단위: 원)

구 분	전자송달	자동이체	전자송달+자동이체
세액 공제 (마일리지 통합)	800	800	1,600

□ 향후계획

- 조례 및 규칙 입법 예고 : 9. 15 ~ 10. 5
-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시의회 정례회 안건 제출 : 10~11월

3

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추진

5회계연도(2023~2027년)의 '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'을 수립하여 중·장기적인 시유재산의 효율적·체계적 관리 도모

□ 추진배경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시행령 개정('22.4.21.시행)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'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'을 수립하도록 제도 신설

※ 매년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의회(행자위)에 제출하여야 함 (공유재산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6조의2)

□ 수립개요

- 정 의 : 공유재산의 효율적·체계적 관리·처분을 위해 5회계연도 이상 기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수립하는 중장기적 총괄계획
- 작성주체 : 재산총괄관이 각 재산관리관 소관 공유재산의 관리·처분 계획 등을 취합 조정하여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
- 작성대상 (2023년 ~ 2027년, 5년)
 - 중장기적인 공유재산 정책방향
 - 공유재산 관리·처분의 총괄계획
 -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
 -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
 - 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
 - 공유재산의 관리·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

□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

- 실·국별 '자체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' 작성 및 수립 : 7~8월
- 재산총괄관이 '市 전체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' 수립 : 9~10월
- 전문가 검토회의(서울연구원, 한국공유재산정책학회 등) 개최 : 9월
- 공유재산심의회 심의(10월) 및 시의회(행정자치위원회) 서면 제출 : 11월

정기적인 재물조사를 통해 물품운용 상황, 물품 상태, 과부족 현황 등을 파악하여 보다 체계적인 물품관리 업무추진

□ 추진근거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60조, 동법 시행령 제59조
 - ※ 법 제60조 개정('21.4.)으로 '22년부터 매년 재물조사 실시(기존:2년 단위)
- 2022년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지침(행정안전부, '22.4.)

□ 조사개요

- 조사기간 : 2022. 6. 1. ~ 10. 31. (조사기준일: 5.31.)
 - ※ 금년 8월말 조직개편 및 사무실 재배치 부서의 경우 8.31.로 기준일 조정
- 조사대상 : 서울시 소관 모든 물품(단, 재물조사가 곤란한 소모품 등은 제외)
- 조사방법
 - 각 기관별 주무부서 책임 하에 부서별로 조사반(3명) 편성·운영
 - 물품관리대장에 등록된 물품 목록과 실물을 직접 대조하는 전수 조사 실시
 - 물품 과부족 현황 및 원인, 물품 상태, 사용 여부 등에 대한 실태 파악
- 조사절차



□ 향후계획

- 재물조사 결과 초과품, 부족품 등에 대한 재물조정 실시 : ~10. 6.
- 기관별 재물조사 결과 취합 및 행정안전부 보고 : ~10.31.